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관의 장 |
| | |



제791호 2019. 1. 30.(수)

안내문

-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오니, 절차 및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보는 매월 10일, 20일, 30일에 발행(10일 단위)되며 공보발행 방식이 전자식 형태로 전환되어 서구청 홈페이지(www.dg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구청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 서구소식⇒ ‘서구공보’에서 열람
- ◇ 공보발행 절차
 - 【원고접수마감】 매월 8일, 18일, 28일(D-2)
 - 【편집】 접수마감 익일(D-1)
 - 【게시】 발행일(D일)
- ◇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다음날”발행되며, 접수마감 이후 접수분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 게재됨으로 특별히 게재되어야 할 원고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고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송부하여 주시고, 각종 조례, 규칙, 고시, 공고 등의 업무는 공보 발행 일자를 참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회람 | | | | | | | | | |
|----|--|--|--|--|--|--|--|--|--|

◀ 대구광역시 서구 ▶

규 칙

◎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42호

3

고 시

◎ 도로명주소 고시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3호

14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842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3조(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매긴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하되, 소수점 이하 처리 방법에 대해 세부평가기준에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회의록) 발주부서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주요 발언내용
4. 그 밖에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 | | | |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남, 여) | 전문분야 |
| 주택 | 주소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 직장 | 직장명 | | 직위(직급) | |
| | 주소 | (우편번호)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e-mail | | |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교 | 학위 | 전공 |
| | | | | |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무처 | 직위 | 주요업무 |
| | | | | |
| | | | | |
| 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격증명 | 인가·관리기관 | 비고 |
| | | | | |
| | | | | |
| 저서 및 논문 | | | | |
| 기타사항 | | | | |

위와 같이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를 제출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

- 사 업 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제안서 평가에 공정하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안각서

○ 사업명 :

○ 발주부서 :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9항에 의거 규칙제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 공정하고 투명한 낙찰자 선정을 위한 기준과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격 요건, 위원선정 방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안서 평가점수 산정 및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7조)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3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 도로명주소 부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21길 44 외 7건

| 소재지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 (별지참조) | | | |

○ 도로명주소 폐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21길 44 외 6건

| 소재지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폐지사유 |
|--------|-------|-----------|------|
| (별지참조)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663-3071)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지)

도로명주소부여조서

| 구분 | 종전의 주소 | | 도로명주소 부여일 | | | | 도로명부여사유 | | 비고 (행정동) |
|----|--------|---------|-----------|--------|--------------|----------------|-----------|-------------------------------|-------------|
| | 동 | 지번 | 도로명 | 건물번호 | 부여일 (변경일) | 부여사유 (변경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
| 신청 | 중리동 | 1054-20 | 평리로21길 | 44 | 2019.1.9. | 신축 | 2010.4.7. | 평리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상중이동 |
| 신청 | 중리동 | 1054 | 평리로21길 | 46 | 2019.1.9. | 신축 | 2010.4.7. | 평리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상중이동 |
| 신청 | 중리동 | 115-6 | 평리로 | 257 | 2019.1.9. | 신축 | 2010.4.7. | 평리동을 관통하는 도로 | 상중이동 |
| 신청 | 평리동 | 1196-1 | 평리로 | 355-4 | 2019.1.10. | 신축 | 2010.4.7. | 평리동을 관통하는 도로 | 평리4동 |
| 신청 | 내당동 | 12-36 | 통학로 | 35 | 2019.1.14. | 신축 | 2010.4.7. | 기존 "통학길"을 "통학로"로 변경 | 내당1동 |
| 신청 | 상리동 | 42-1 | 가르뱅이로16길 | 16-10. | 2019.1.18 | 신축 | 2010.4.7. | 가르뱅이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상중이동 |
| 신청 | 비산동 | 667-2 | 달서로45길 | 6-13 | 2019.1.18 | 신축 | 2010.4.7. | 달서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비산1동 |
| 신청 | 원대동3가 | 1257-13 | 달서로58길 | 20 | 2019.1.18 | 신축 | 2010.4.7. | 달서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선여덟번째로 분기된 도로 | 원대동 |

도로명주소폐지조서

| 소재지 | | 도로명주소폐지일 | 폐지사유 |
|---------------|---------------|------------|-------|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 |
| 중리동 1054-20 | 평리로21길 44 | 2019.1.9 | 건물 철거 |
| 중리동 115-6 | 평리로 257 | 2019.1.9. | 건물 철거 |
| 평리동 1196-1 | 평리로 355-4 | 2019.1.10. | 건물 철거 |
| 평리동 1196-22 | 평리로73길 5-17 | 2019.1.10. | 건물 철거 |
| 내당동 12-36 | 통학로 35 | 2019.1.14. | 건물 철거 |
| 상리동 42-1 | 가르뱅이로16길16-10 | 2019.1.18. | 건물 철거 |
| 원대동3가 1257-13 | 달서로58길 20 | 2019.1.18. | 건물 철거 |